

중소벤처기업부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설명회

한국산학연합회



목차 CONTENTS

- 01. '22년 추진계획
- 02. 사업진행절차
- 03. 기타사항
- 04. Q&A

01 '22년 추진계획

- 가. '21년 추진실적 및 성과
- 나. 추진방향
- 다. 세부 추진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현황

선정·지원

21년 2,360개 기업이 신청하여 1,112개 기업에 바우처 활용지원

구 분	신청	선정(A)*	바우처 구매기업(B)*	경쟁률(A/B)
기업선도형	2,078	1,788	847	2.11 : 1
기반플러스형	671	572	282	2.03 : 1
합 계	2,749	2,360	1,129	2.09 : 1

* 자격 검토(바우처 50%이상 환불, 부도 또는 휴·폐업 등 제외)를 통해 대상 확정된 기업을 의미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 건수는 총 12,550건

공동활용 지원	바이오·의료	기계·소재	전기·전자	지식서비스	화학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합계
이용 건수	4,120	3,353	1,819	1,680	1,136	348	94	12,550

공동활용 인프라 현황

운영기관 현황

21년 207개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운영기관 협약 완료 ➡ 22년 운영기관 자격 유지

구 분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학	2년제(사립)	5	4	-	1	-
	4년제(사립)	36	32	3	1	-
	4년제(국·공립)	19	17	1	-	1
	소 계	60	53	4	2	1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10	9	1	-	-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32	29	2	-	1
	특정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15	4	1	-
	소 계	62	53	7	1	1
기타	일반기업	45	30	10	5	-
	공인인증 및 시험기관	30	26	2	2	-
	기타공공기관 / 비영리법인	10	8	1	1	-
	소 계	85	64	13	8	-
합 계		207	170	24	11	2

연구시설장비 등록

운영기관의 연구시설·장비는 11,928점으로 기계가공/시험장비 4,273점,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3,123점, 전기/전자장비 1,533점 순으로 등록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지원

최근 3년간 공동활용 평균 지원건수는 19,388건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애로 문제 해결

- 207개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운영기관 협약 완료

* 참여기업 선정 수 : ('19)1,888→('20)2,435→('21)2,360 , 바우처 소진일 : ('19) 9월5일 / ('20)7월6일 / ('21) 상반기 3월(1개월 이내), 하반기 7월1일(발행 후 즉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지원건수(건)	20,097	25,516	12,550	19,388
예산(억원)	136.4	136.8	85.9	120
정부출연금 1억원당 지원 건수	147.3	186.5	146.1	160.0

< 투입예산 대비 연구시설장비 지원건수 >

산학연 유헤장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화 제고

대학·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바우처 사용을 위해 등록한 연구시설·장비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 '21년부터 중소기업이 첨단연구장비(슈퍼컴퓨터, 방사광 가속기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가속기연구소, KISTI 협약 완료

구 분	2019	2020	2021	3년 평균
예산(억원)	136.4	136.8	85.9	120
등록 장비 수(점)	9,020	9,890	11,928	10,279
공동활용 장비 수(점)	2,210	2,408	1,660	2,093
장비이용건수(건)	20,097	25,516	12,550	19,388
등록장비당 이용건수(건)	2.2	2.6	1.1	2.0
공동활용률(%)	24.50%	24.35%	13.95%	20.9%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바우처 발행방식 및 제도 개선

-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선착순으로 발행함에 따라 바우처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다수의 민원 발생
- 사업 참여횟수 제한이 없어, 매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 바우처를 선점하는 경향 발생
* 최근 3년간('18~'20) 사업 참여기업의 35.3%(1,093개 기업)가 바우처를 지속 구매

▶ 바우처 발행 방식 변경 및
신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 수요 증가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확충

- 중소기업의 자체 연구시설장비 부족은 매년 제기되는 문제로 효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100%)한 연구장비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14.9% (('17)10.5% → ('18)17.9% → ('19)16.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18~'20))

▶ 지역거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홍보 강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

- 사업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성과점검 절차가 미흡하여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사업수행기관의 성과검증을 위한
절차를 신설, 사업 특성에 부합한
성과 관리 추진

바우처 관리 효율화

신규 참여 중소기업 우선 선정 및 바우처 추첨제 도입

-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 우선 선정
 ① 우선 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② 바우처 잔액이 남을 경우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우선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구매 이력이 1회 이하 기업
3순위	바우처 구매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바우처 제도 개선

바우처 환불 최소화

중소기업이 '바우처 신청' 시 연구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공동활용협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운영기관이 발급한 장비이용 견적서 포함)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바우처 유효기간을 확대(45일→90일)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지원
 * 단, 유효기간 내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기업은 바우처 환불 처리

바우처 1회 발행 상한 폐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바우처 1회 발행 상한을 내역사업별 지원한도까지 확대
 * 연구시설장비는 종류별 이용단가가 상이하며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이용료가 증가

지역거점 인프라 조성

지역거점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인프라 확대

-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파트너 대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등과 운영기관 협약 추진하여 지역거점 공동활용 인프라 확대
* 5G 밀리미터파 테스트베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D 버추얼랩(고려대, 전문랩) 등
- 대학·연구기관, 지역거점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운영기관 참여 유도(연간 3회)

지역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실태조사 실시

- 사업 수행기관의 장비 운영 및 지원 현황, 사업개선 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실적이 높은 20개 운영기관(권역별* 4개) 대상 실태 점검 실시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 5개 권역(지원실적이 높은 기관순)

수행기관	점검항목	세부항목
주관연구 개발기관	1. 연구시설장비활용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여부 ▪ 시제품을 생산·영업용이 아닌 연구개발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의 여부
	2. 사업수행현황	▪ 시험데이터, 시제품, 시험성적서 등의 보관 여부 ▪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준수여부
운영기관	1. 사업수행의 적절성	▪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집행현황 ▪ 연구시설장비이용료 및 장비 자문비용 집행현황 ▪ 사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홍보 현황 ▪ 연구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
		▪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 현황 * 연구시설장비사용일지, 시험데이터, 회계서류 등의 기록·유지·보관 현황
	2. 사업관리 현황	▪ 운영요령, 관리지침 등 준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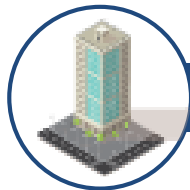
<사업 수행기관 실태점검 항목(안)>

* 변경될 수 있음

성과관리 및 확산 강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 제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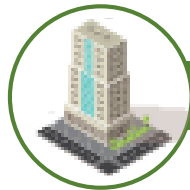
- 사업 종료 이후 수행기관(중소기업, 운영기관)의 성과검증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설, 사업 특성에 부합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 추진
 - * 성과분석(전문기관) 및 운영기관 대상 최종점검(관리기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특성에 맞춘 성과 측정 실효성 부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반플러스형에 한하여 **바우처 사용 후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성과보고서'**를 제출 <의무>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사용실적 및 시험결과·시제품 등 사업 수행 결과물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 운영 보고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촉비 차등**지급

* 사업 활성화 실적, 연구시설장비 이용 실적, 사업관리 실적 등 포함

** A등급(80점 이상) : 12%, B등급(70점 이상, 신규 운영기관) : 8%, C등급(70점 미만) : 5%

'21년 우수사례집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성과 확산

- 이해관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신규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참여동기 유발
 - 우수사례 대상기관에 기자 및 작가가 직접 방문·취재하여 현장의 생생함을 포함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사례집 제작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이용료 지원

- 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 조건

'22년 지원 규모 : 83억원 (기업선도형 20억원, 기반플러스형 63억원)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기업부담금
기업선도형	최대 6개월, 10백만원	20% (현금)
기반플러스형	최대 6개월, 50백만원	20% (현금)

* 지원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이용기간 내 미활용 시 바우처 발행금액 회수

* 지원기간은 사업신청부터 장비이용을 종료할때까지의 총 기간을 의미하며, 바우처 유효기간은 최대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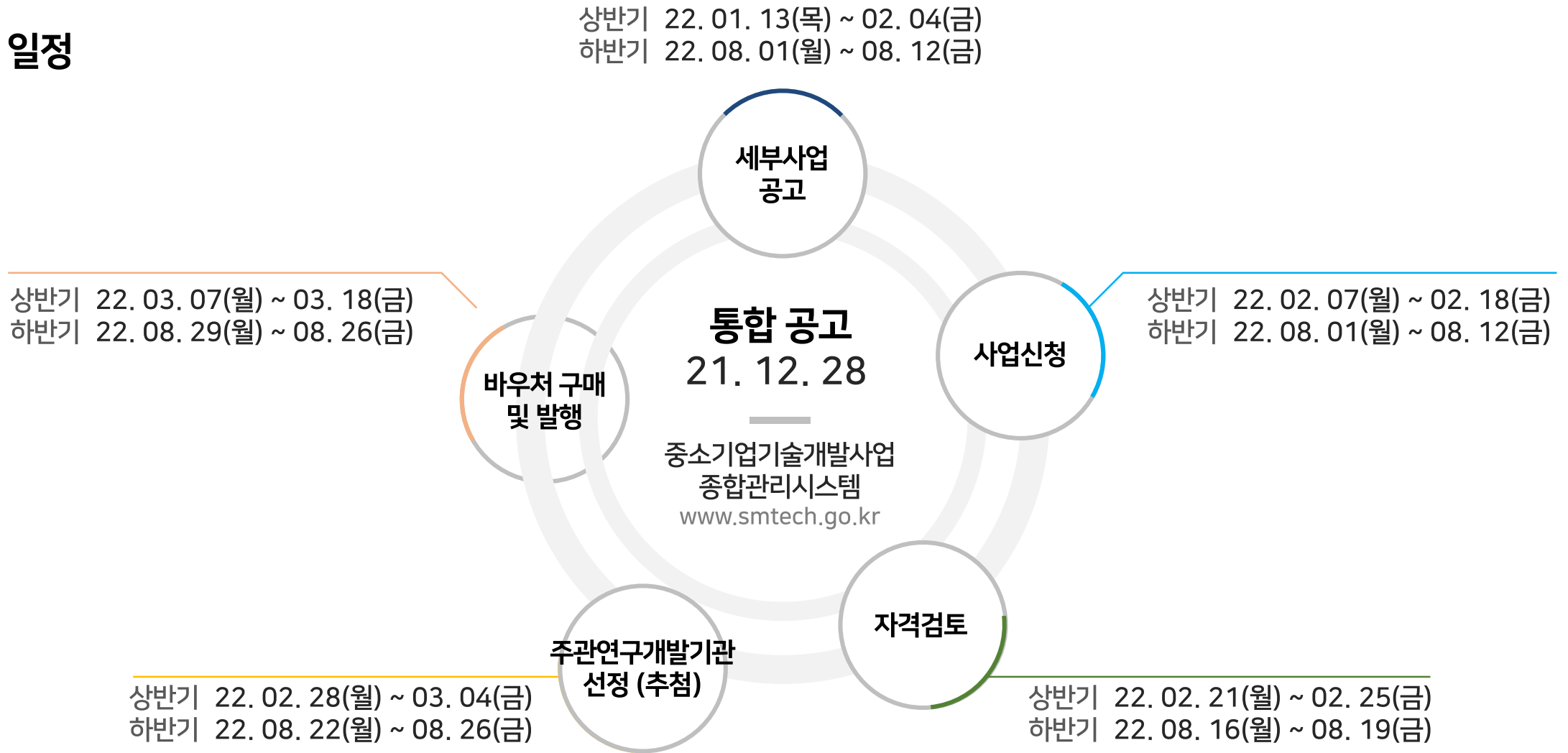
추진 체계

- 1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기획, 문제과제 처리,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
- 3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합회
 - 운영기관 협약 및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관리, 시스템 관리, 바우처 발행 및 관리, 회계처리, 현장점검, 특별점검, 최종점검 등
- 4 (ZEUS관리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시스템 관리, 연구장비 등록관리, 연구장비 검색 및 예약 관리, 장비예약·결제 플랫폼 지원 등
- 5 (운영기관) 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등록, 이용료 산정, 장비·서비스 공유 등
- 6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기업
 - 사업신청서 제출, 바우처 구매(부담금 납부), 운영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 등

02 사업진행절차

- 가. 추진일정
-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진행절차
- 다. 운영기관 진행절차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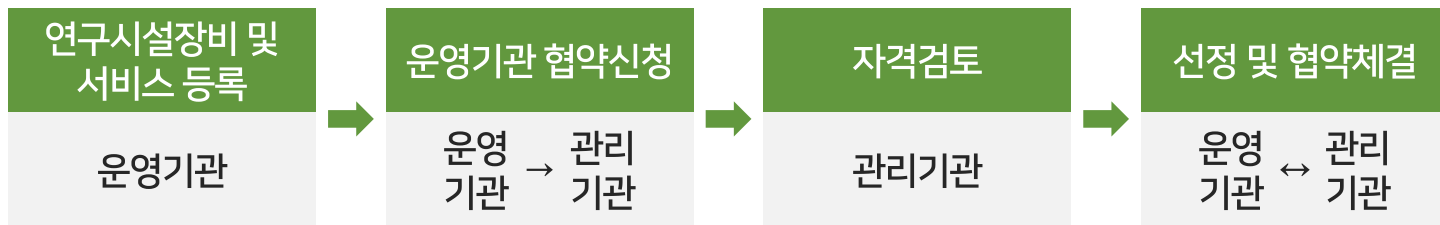
* 하반기공고는 예산 잔액에 따라 진행됨

주체별 사업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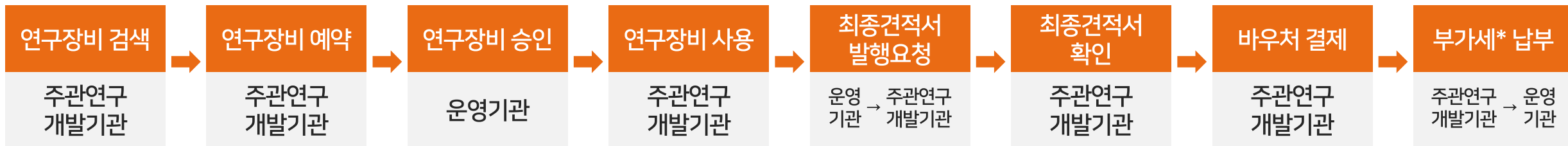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절차



운영기관 사업절차



연구장비 이용절차



02 사업진행절차

나. 주관연구개발기관 진행절차

사업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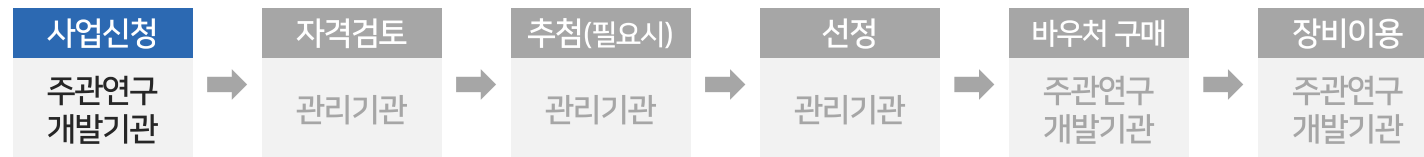


-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구매 바우처 50%이상 환불기관

사업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 2. 7(월) 09: 00 ~ 2. 18(금) 18:00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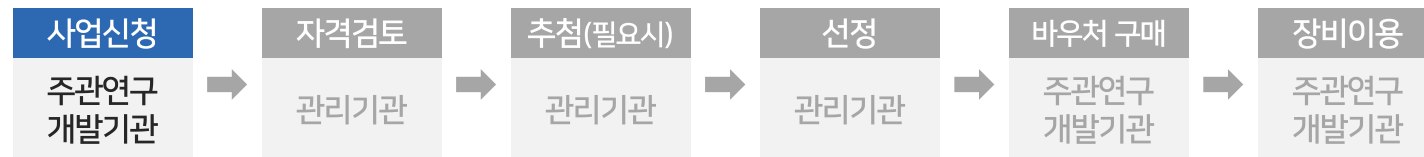
신청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①	신청서	0	0
②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0	0
③	서약서	0	0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0	0
⑤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0	0
⑥	사업자등록증	0	0
⑦	환불통장 사본	0	0
⑧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신청 마감일 이후)	0	0
⑨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0

사업 신청



신청절차 및 접수 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① 1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우선순위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가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바우처 신청금액 및 사용기간**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

구 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계
기업선도형	10,000,000원	2,500,000원	12,500,000원
기반플러스형	50,000,000원	12,500,000원	62,500,000원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탈락

- ✓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 내용 수정 불가능
- ✓ 접수기간 내에는 제출 내용 수정 가능
- ✓ 제출 서류 미비 및 작성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자격 검토

요건 검토



- 1 **기관정보**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명,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여부 확인
-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여부 및 유효기간 확인
- 3 **환불계좌**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구비서류(통장사본)간 일치 여부 확인
- 4 **바우처 신청금액 및 사용기한**
- 5 **장비활용계획서(기반플러스형)** 장비의 활용 목적이 단순 인증이 아닌 연구개발 여부 확인
* 장비활용계획서에 활용목적이 연구개발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탈락 될 수 있음
- 6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R&D사업 제재조회
- 7 **참여제한 여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신규 신청 기업 우선 지원

우선순위	선정 조건
1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기업
2순위	최근 3년 간('19~'21) 바우처 구매 이력 1회 이하 기업
3순위	바우처 구매 이력 2회 이상인 모든 기업

- 우선순위에 따라 바우처를 발행하고, 바우처 예산 잔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에 바우처 발행
-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 기업의 바우처 사용규모가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해당 그룹은 추첨을 통해 바우처 발행
- 추첨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선정된 기업을 별도 공지 됨

구매 · 발행



바우처 구매 및 발행

바우처 구매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바우처 구매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접속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바우처 신청금액 입력** → **공동활용협의를서 제출**

**사업예산 초과 시, 초과비율에 따라
바우처 신청 금액 삭감 후 발행**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20%)은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된 기업부담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확인 가능(연구기반공유시스템-> 바우처 현황)

바우처 발행

- 기업부담금(20%) 납부 후 바우처 발행(납부 후 30분 이내 적용)

22년 예산

기업선도형 2,000백만원,
기반플러스형 6,300백만원

구매 · 발행

유효기간



“ 바우처 발행일(기업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시기별 상이함 ”

- ① 기본 90일 , 9월 1일 이후 45일
 - 첨단장비(방사광가속기, 슈퍼컴퓨터) 활용할 경우 최대 120일까지 사용 가능
- ② 만료일자는 바우처 발행일(기업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직접 확인
- ③ 유효기간 경과 시 미 소진 바우처는 시스템상 자동환불처리(유효기간 연장 불가)
- ④ 자동환불 처리된 바우처는 기업부담금만큼 환불
- ⑤ 미사용 환불 바우처는 지원한도가 남았더라도 재구매 불가

바우처 구매 후 50%이상 환불기업은 차년도 참여 제한

장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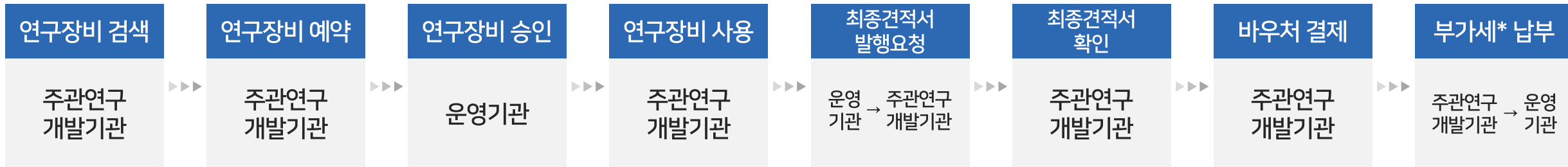


예약방법

- ZEUS시스템을 이용한 장비 예약 : ZEUS.go.kr

* 장비를 예약하기 전에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바우처 구매를 완료한 상태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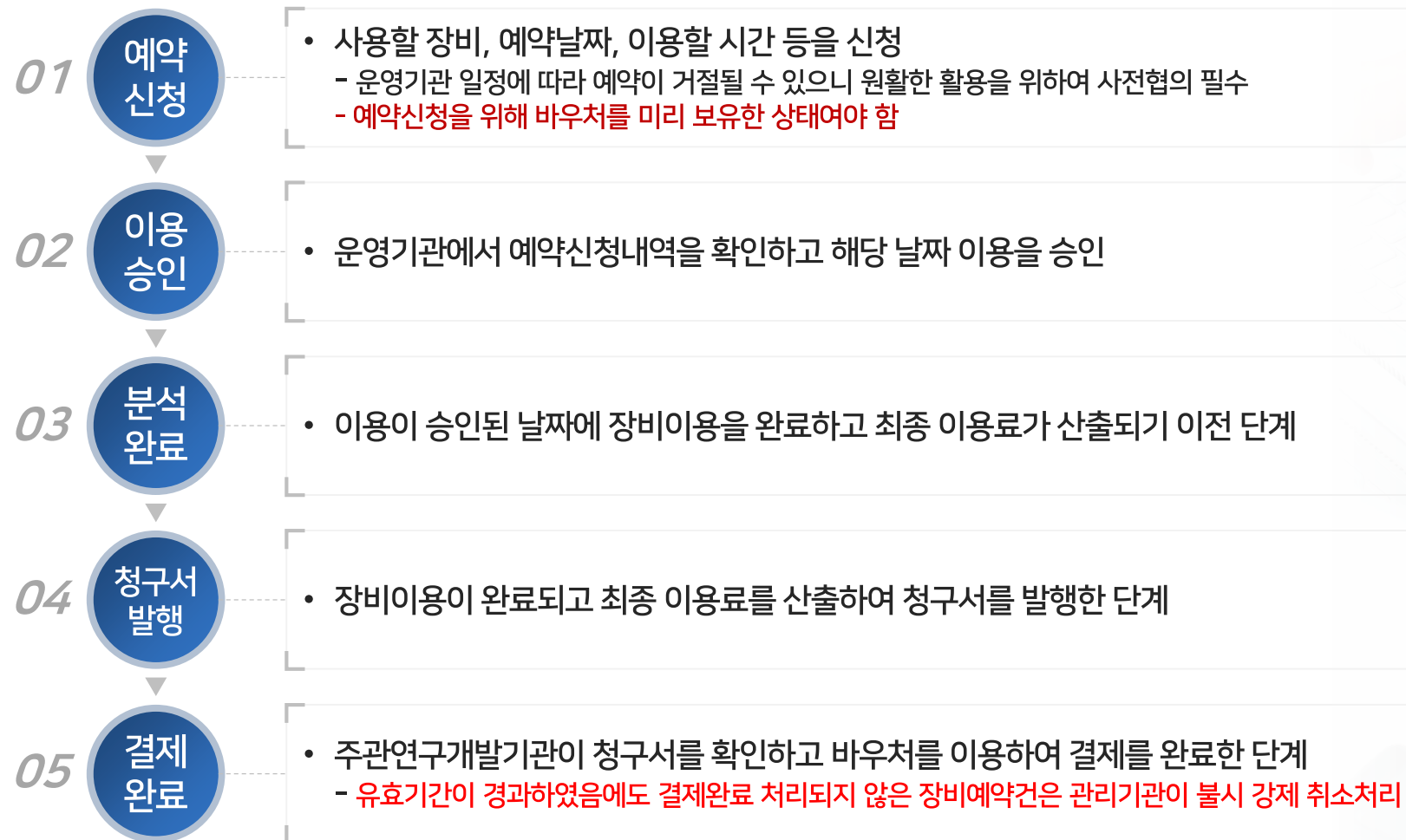
장비이용 절차



*** 부가가치세는 장비이용료(정부출연금+기업부담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장비 이용

이용 절차



장비 이용 (ZEUS)



모바일 | 로그인 | 사이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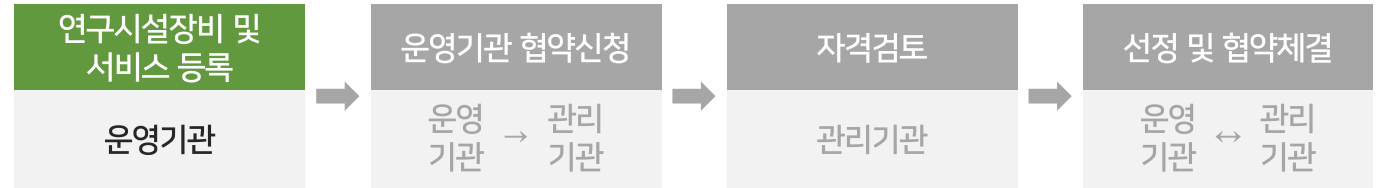
모바일 | 로그인 | 사이트맵

02 사업진행절차

다. 운영기관 진행절차

협약 신청

운영기관



- 중소기업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
- 국가 R&D재원으로 도입·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동 사업에서 활용
- ZEUS등록 장비의 바우처 활용 제한 사유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에 따른 '불용' 장비
 - 제품의 생산·양산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써 지침을 위반한 장비이용이 우려되는 장비
 - 노후·고장 및 정비 등의 사유로 활용이 어려운 장비

운영기관 혜택



실적 비례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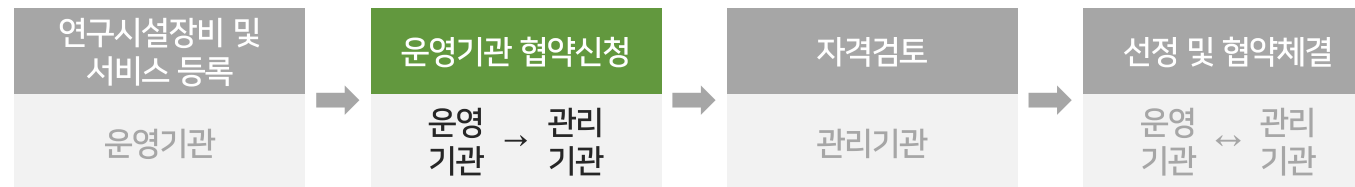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통한 장비이용을 지원한 실적에 비례하여 연구기반활용촉진비 별도 지원

* 지원 비율은 매년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상이(21년 10%)

* 연구기반활용촉진비는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사업홍보비, 장비담당자 훈련비, 교류활동비, 기타 수용비 등으로 활용 가능

협약 신청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2. 2. 7(월) ~ 상시

'21년 협약체결을 완료한 운영기관의 경우, 재협약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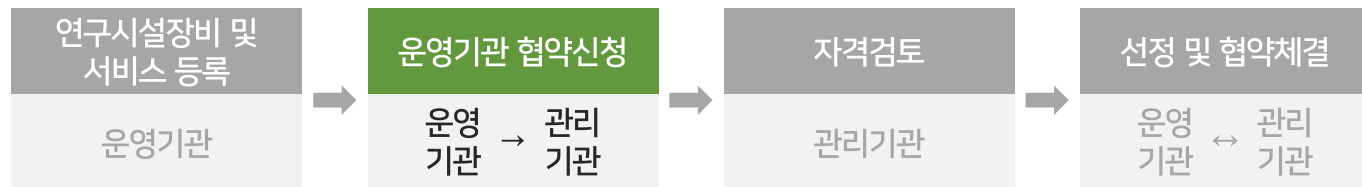
신청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①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0
②	연구시설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시설장비 리스트	0
③	사업자등록증	0
④	연구시설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0
⑤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0

협약 신청

신청절차 및 접수 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① 1단계 : 회원가입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

③ 3단계 : 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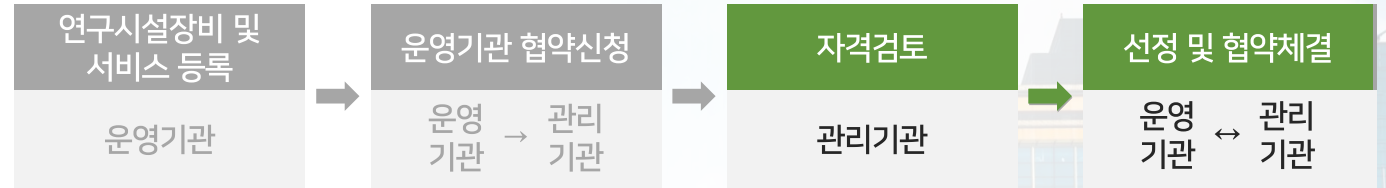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

④ 4단계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반려, 수정 후 협약 신청가능

자격 검토

요건검토 및 협약



- ① **기관정보** 기업명, 소재지, 대표자명, 개업년월일 : 사업자등록증과 일치 여부 확인
- ②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구비 서류(계좌 사본)간 일치 여부 확인
- ③ **R&D인프라 연계지원단 신청서(해당 시)** R&D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시험·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 수행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자격 검토 후, 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협약체결(협약기간 ~22. 12.31)

운영기관 준수사항

-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장비 이용 내역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결제방식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이용료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산정
- 연구시설장비별·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별표 5 참조: 과대계상배제원칙, 최저가격책정원칙, 수익자부담원칙, 명시비용산정원칙

- 운영기관은 대표자 또는 내부직원이 겸직하고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동 사업 바우처를 통한 장비이용을 제공할 수 없다.
- 동일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에는 동 사업 바우처를 통한 장비이용을 할 수 없다.

이용료 지급

- 운영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결제완료 후** 장비이용료 지급신청이 가능(차월 1일 ~ 9일)
 - 단순 청구서 발송상태에서는 장비이용료 지급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 결제완료 :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이 청구서를 확인하고 보유한 바우처의 사용을 승인
- **연구기반활용촉진비는 22. 11.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이용건에 한해 지급되며,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사용기한은 22. 12. 31일까지**

03 기타사항

- 가. 특별점검 · 최종점검
- 나. 문의

특별점검

-  사업관리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운영기관으로 현장점검 실시
 * 부적절하게 사업에 참여한 사항이 적발 시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 가능 (사업 관리지침 참조)

최종점검 및 연촉비 정산

- 사업종료 후 관리기관은 운영기관 최종(현장·서면)점검 실시
 * 현장방문 방식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서면 대체가 가능
- '22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기반플러스형, 운영기관) 제출
- 22년 연구기반활용촉진비 회계정산은 서면 실시 예정
 * 단, 회계법인 판단에 따라 정밀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환 가능

운영기관별 연촉비 구간	정산 수수료	비고
4천만원 이상	연촉비의 1% (하한액 80만원)	부가세 포함
2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연촉비의 2% (하한액 60만원)	
4백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연촉비의 3%	
4백만원 미만	면제	

매뉴얼

• 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고객센터 > 관련자료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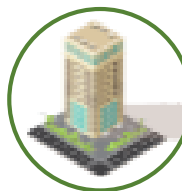


한국산학연합회

* 사업관련 문의, 바우처 이용관련 문의, RSS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련 문의

전 화 : 044-410-3326, 3321~3

이메일 : rndinfra@auri.go.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이용관련 문의

전 화 : 042-865-3651, 3454

이메일 : support@nfec.go.kr

Q & A



• 예산관련

- 예산 증액 계획 여부

: 2022년 예산은 83억(기업선도형 20억, 기반플러스형 63억)으로 증액 및 추경 계획 없음

- 상·하반기 바우처 분할발행 미시행 사유

: (기존) 바우처가 선착순으로 소진됨에 따라 상·하반기 분할지급의 실효성이 매우 저조
(변경) 운영되는 기존 바우처 발행방식을 신규기업 우선 지원을 위한 순위제로 변경하고,
선정기업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운영예정

* 단, 상반기 바우처 환불 및 취소 금액 발생 시, 하반기 추가 공고 예정

- 정부지원금 확대(70% → 80%) 사유

: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R&D사업의 기업부담금 축소에 따라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도 동일하게 적용함('21년 기업부담금 30% → '22년 20%)

* 기업부담금 비율이 감소하면 총 바우처 발행금액도 감소하므로 예산이 전년보다 더 빨리 소진되는 것은 아님

• 운영기관 관련

- 21년도 협약기관의 재협약 필요 여부
: 21년 협약기관의 협약기간은 22.12.31까지로 재협약 없이 운영기관 자격을 유지
- 22년도 협약변경 진행절차(장비이용료, 연촉비 계좌변경, 장비 담당자, 리스트 변경)
: 협약변경 공문을 관리기관으로 제출(rndinfra@auri.go.kr) 확인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수정/승인
장비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과 같이 ZEUS시스템을 통해 증빙등록 및 변경
- 운영기관 수수료 변경 시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 이용료 변경 시,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은 제우스 시스템에 공문과 함께 업로드
이용료변경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support@nfec.go.kr)로 문의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자격 및 신청 관련**

- 내역사업 전환 가능여부(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불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 시 연구장비활용 목적에 따라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을 선택하여 신청
2개 내역사업을 모두 신청(중복신청) 불가능

- '20년도 50% 이상 환불 기업으로 분류되어 '21년 참여 불가했던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 여부

: 가능함. 단, 최근 3년내 이용실적이 있으므로 2순위~3순위에 해당

• 바우처 관련

- 바우처 구매 횟수와 사용횟수 관련

: 공고에 따르면 상/하반기 구매 가능하나, 상반기 예산 소진 시 하반기 신규모집 및 발행 불가능

: 바우처는 구매한 바우처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그 횟수에 제한은 없음

(예시. 바우처 1천만원을 구매하여 1백만원씩 10회 결제 가능)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결제완료까지 90일 이내임(장비예약일과 무관)

- 바우처 구매 기간, 최대 신청 금액

: 바우처 구매기간은 '22.3.7~ 3.18까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할 수 있음

- 바우처 추천 방식

: 순위 내 무작위 함수를 통한 추천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결과 공개

• 바우처 관련

- 신뢰성시험 가능 여부

: 기업선도형 가능

: 기반플러스형은 장비활용계획서에 연구개발목적으로 신뢰성시험이 필요함을 명시한 경우 가능

: 장비·서비스이용료에 시험성적서 발급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나, 분리된 경우 결제 불가능
단, 바우처 결제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시 '22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 불가능 / 첨단장비(슈퍼컴퓨터, 방사광가속기) 이외의 모든 장비는 유효기간 90일로 동일함

- 기타

- 공동활용협약서

- : 공동활용협약서는 바우처 구매 신청 시 제출양식으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공지 예정

- 운영성과보고서(기반플러스형, 운영기관)

- : 운영성과보고서(주관연구개발기관-기반플러스형, 운영기관)의 제출 양식은 수정/보완 후 관리지침을 통해 배포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감사합니다.
한국산학연합회

